

“미세먼지 줄이자”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kg당 ‘24.2원’서 ‘3.8원’으로 조정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유연탄) 대신 LNG의 사용을 늘려 조금이나마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했고, 발전용 LNG의 개소세는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은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이에 4월 1일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kg당 24.2원

에서 3.8원으로 인하하며,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한다.

‘열병합용’은 ‘일반 발전’에 비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 대상으로 정했으며,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한편 LNG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 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리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미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했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수입부과금은 정부가 에너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부과하는 준조세로, 수입단계에서 관세(LNG의 경우 기본세율 3%, 할당관세 2%)와 함께 부과된다.

| 정영선 기자 |

【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 】

구분		특성	제세부담금 조정
일반	일반 LNG 발전	한전 5개 발전자회사 등 LNG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개별소비세 : 60원 → 12원/kg
	직수입 자가발전	LNG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수입해 일반 LNG 발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 및 자가 사용	수입부과금 : 24.2원 → 3.8원/kg
열병합	집단에너지 사업자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열은 공급구역 내 수요자에게 공급	개별소비세 : 60원 → 8.4원/kg(탄력세율)
	자가 열병합 발전	10M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 발전, 공동주택·산업체 등 수요처에 공급	수입부과금 : 24.2원 → 0원/kg(환급)
	연료전지	LNG에서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	